

[홍콩] 2017년 12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 주요내용

- 12월 18일 전라남도 지역 수입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 수입금지
 - 식품 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에서는 한국당국에서 전라남도 지역에 고병원성 H5N6의 조류 독감이 발병 했다는 통지를 받아, 12월 18일부로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 (달걀포함) 수입금지 조치 실시
 - 식품안전센터 대변인은 홍콩이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77톤의 냉동 가금육 및 39만개의 달걀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다고 전해였음. 또한, 해당문제에 대하여 한국 당국과 이미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세계동물 보건기구에 발송한 해당국가에 대한 조류독감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인 중으로 해당지역의 병역이 확산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 예정이라고 발표함

□ 시사점

- 전라남도 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 대한 방역 등에 주의해야겠으며 홍콩 정부의 한국 가금류 수입에 대한 추후 조치 등에 유의하여 수출업체의 신속한 대처 및 준비 요망
- 출처 : 홍콩식품안전센터 (2017.12.18.)
 - 참고 웹사이트 : http://www.cfs.gov.hk/sc_chi/press/20171218_0999.html

1. 홍콩 식품 잔류농약 모니터링

□ 홍콩 식품 품목별 잔류농약 초과검출 현황

- 식품환경위생서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총 442개 식품류로 분류, 95,000개의 샘플 조사 가운데 21개 채소·과일에서 농약을 과다검출 했으며, 불 합격률은 전체 0.2% 미만인 것으로 발표
 - 검출된 식품은 홍콩 측이 관련 수출당국 및 수입상과 지속적인 확인 및 자료 요청 중으로 필요 시 별도 조치할 예정
 - 한국산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
 - 홍콩 식품안전센터 웹사이트에서 관련 규정 및 기준치 검색이 가능하므로 주력 수출 신선 품목의 경우 자주 쓰이는 농약류에 대한 기준치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
- 식품 잔류농약 검사 방법
 - 수입시점·유통단계(도소매) 구분 없이 동일 적용
 - 기존 수입통관 프로세스 외 필요시 랜덤으로 샘플 채취 후 검사기관에 송부
 - 일반식품은 24시간, 특별 품목(유제품등)은 48시간 이내 통관 완료

〈홍콩 잔류농약 검출 리스트〉

날짜	품 목 명	농 약 명	검출결과(ppm)	적정기준(ppm)
2017.1.23	오렌지	profenofos	0.22	0.1
2017.1.26	무	cyhalothrin	0.036	0.01
2017.2.2	초이삼	cyhalothrin	0.74	0.2
2017.2.27	파프리카	Profenofos	1.1	0.5
2017.3.2	초이삼	chlorpyrifos	0.21	0.1
2017.3.14	중국배추	acetamiprid	3.3	1.2
2017.3.16	초이삼	cyhalothrin	0.97	0.2
2017.3.16	초이삼	cypermethrin	13.8	2.0

날짜	품 목 명	농 약 명	검출결과(ppm)	적정기준(ppm)
2017.3.23	초이삼	chlorpyrifos	0.43	0.1
2017.4.13	중국채소(애기배추)	chlorpyrifos	1.4	0.1
2017.4.19	고구마	cypermethrin	0.036	0.01
2017.6.5	파프리카	profenofos	2.9	0.5
2017.6.5	중국배추	chlorpyrifos	0.31	0.1
2017.7.3	오이	methomyl	0.21	0.1
2017.8.28	파파야	thiamethoxam	0.02	0.01
2017.8.28	공심채	cyhalothrin	0.43	0.2
2017.8.28	냉동 노른자액	fipronil	0.13, 0.14	0.02
2017.8.28	냉동 계란액	fipronil	0.056	0.02
2017.8.31	계란	fipronil	0.062, 0.077, 0.087	0.02
2017.9.5	두리안	ethephon	4.0	2.0
2017.10.13	중국상추(당생채)	cyhalothrin	0.62	0.2
2017.12.13	탠저린 귤(두종류)	profenofos	0.22/0.28	0.1

※ 자료 기준: 2017. 12. 13일 업데이트

○ 미등록 농약 검출 시 제재

- 미등록 농약 검출 시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이 인체에 위험하지 않거나 무해할 경우 수입·판매가 가능하며 유해성 여부는 식품환경위생부의 위해성 평가로 결정
- 현지 식품섭취 양상 및 안전기준치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며 위해성 평가의 경우 소요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름.

○ 위해성이 판단된 식품의 경우 시장에 판매 불가하며, 전량 리콜조치 실시 및 관련 수입상에 잔류농약허용 기준 초과와 동일한기준의 벌금형 및 구금형 부과

- 벌금 5만 HKD 및 6개월의 구금형

○ 참고 사이트 :

- 홍콩 식품 안전센터(Communication Resource Unit)

<http://www.cfs.gov.hk> / 전화 : (852)2381-6096

III

통관문제사례

○ 해당사항 없음